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
----------	-----

제출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2018. 1. 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전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권한, 직무 및 업무처리 절차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납세자보호관 등의 배치 및 자격요건, 임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바.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2. ~ 8. 22.) 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부과·징수가 위임된 시세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납세자보호담당자”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란 완료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

해가 예상되어 처분 또는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시세 부과·징수 등 시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과 납세자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일시중지 요구”란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정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를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 등의 배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서울특별시 시민 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둔다.

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둔다.

제4조(납세자보호관 등의 자격요건 및 임명)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 ③ 납세자보호담당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세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보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직무)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와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4.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5.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

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시 세무부서 또는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 세무부서 또는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5. 세무부서장 및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한 질문·조사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고충민원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세와 관련된 민원으로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시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수사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 결정 등은 고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보호요청의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 영 및 그 밖에 지방세 관계법령(이하 “지방세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시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시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시세 집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의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정의 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① 세무부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통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일시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을 조사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와 세무부서장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연기) ① 세무부서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통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검토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을 조사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와 세무부서장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 ① 서울특별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개정하는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시 소속 세무부서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과 권

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과 직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민원의 대상과 그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 태 진 (02. 2133-3128)